

제424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17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3)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

상정된 안건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2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2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2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2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 2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3)	2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2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3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3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3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3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3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	3

(09시33분 개의)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to 위하여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3)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09시34분)

○**소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여 일반 국민의 법문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어제 산업특허소위에서는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 중에서 ‘등’ 자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경우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과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등’ 자가 있는 것이 수탁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아 저희는 원안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일단 개정 취지가 어려운 한자어 혹은 불필요한 한자어를 쉽게 풀이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런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기존의 법령은 ‘행위태양’이라는 단 한 글자인데 개정안은 ‘내용·방식·형태 등’ 이렇게 오히려 글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보다 손쉬운 개정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존의 언어도 한자어고 개정된 것도 한자어인데 어려운 한자

어와 개정된 쉬운 한자어의 기준이 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법률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통일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이라는 용어가 요즘 최근에 잘 안 쓰는 용어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는 책자에서도 ‘태양’이라는 용어를 ‘형태’ 또는 ‘모습이나 형태’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른 법률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보면 ‘내용·방식·형태’ 이 세 가지를 열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여기도 ‘등’ 자를 포함을 시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입법 사례를 봐서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했고 동의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기존에 드렸던 말씀은 그러니까 보다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 글자의 단어를 여러 글자로 풀이할 이유가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정을 하려면 이 ‘행위태양’이라는 용어와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이라는 풀이가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되는데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지 확인을 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용어가 세 단어로 늘어났는데 둘 다 한자어라는 말씀을 지적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은 같은 한자어지만 태양이라는 용어가 같은 한자어 중에서도 좀 과거 스타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태양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요즘 교육 받으신 분들이 좀 익숙한 단어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내용이나 방식·형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자어긴 합니다만 보다 익숙한 한자어 표현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 주면 태양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또 하나,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지금 행위태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법령들이 사실은 꽤 있을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꽤 있고 실제로 법률학의 세계에서는 행위태양이라는 단어는 사실 늘 상 사용하는 것이라서 어려운 것은 아닌데 국민들이 좀 어렵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개정하는 계기에 행위태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법령들을 찾아내서 국회에 일괄적으로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도 사실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은 정부 내에서 법제처가 일괄 검토를 해서 정부안으로 일괄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사실 관례였는데 이번 법률은 김정호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해 주셨고 또 발의해 주신 내용이 다른 유사 입법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차후에 저희가 법제처에 그렇게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또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산자부 내에 관련 법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혹시 행위태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법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건 제가 과악을 못 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확인해서 다음에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 검토를 한 후에 일괄 개정하는 게 맞는 프로세스인데 기존에 법률안 제출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용·방식·형태 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이거는 여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아니, 법률가들은 태양이라는 말이 좀 친숙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일반인들이나, 저도 태양이라는 말이 친숙하지 않거든요.

○허종식 위원 하늘의 태양이 아니었어요?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그걸 조금 풀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차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곽상언 위원 그래서 실제로 태양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태양으로 오인될 수가 있고 해서 어떤 문헌에는 양태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요. 그래서 개정을 할 때 일관되게 개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태양’이라는 말이 ‘내용·방식·형태’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합의가 있어야 용어를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우선 원안 가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5쪽입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준에 고시에 위임하던 것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만을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필요한 절차도 부령에서 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저도 고시보다는 상위법령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에 문의드리고 싶은데 세부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입법례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차면 시행규칙이 맞는 것 같은데 기준이라면 원래 시행령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기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은 뭐니까? 어떤 경우는 시행령에다 하고 어떤 거는 시행규칙에다 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00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2000년도에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소관 부처가 중소기업부가 아니라 중소기업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부령이—당시는 산업자원부로 제가 기억하는데—산업자원부령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시에 고시로 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유사한 벤처캐피털 제도의 등록·감독과 관련된 규정들을 대부분 고시에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에 따라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고시에 두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설치가 되고 또 관련되는 고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타 입법례하고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걸 일단 부령으로 올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사실은 일관된 원칙은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상위법령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이게 등록·감독과 관련된 규정들은 상시적으로 바뀌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개정 절차가 용이한 부령으로 위임을 해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이번 법안 자체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규정들은 법률에 규정하는 게 원칙이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더라도 그다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기준은 원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 개인투자조합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뭘 어디에다 규정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중기부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최소한 행정규칙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는 원칙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과제로 정부 내에서 논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11쪽입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원센터의 업무가 지원 업무인 점에서 단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여러 업무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관을 대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M&A 지원센터의 업무 부담의 경감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에 따르더라도 단기간에 업무 미수행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미 현행법에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아야 이게 지정 취소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냥 단순히 단기간 업무 미수행을 사유로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상관없이 다 지정 취소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기간을 6개월로 늘리게 되면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지정 취소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센터로 지정한 업체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미 상당히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에요. 제가 한번 쭉 불러 보겠습니다. 2009년에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이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9년 이니까 지금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한 번도 지정 취소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정된 사례도 전부 다 큰 기업들이고 매우 혜택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삼정회계법인, 한국M&A거래소 이런 회사들이 지정을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한 달을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원안 보류 의견이고 다른 법안에서도 이렇게 기간을 늘려 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참고자료로 첨부했는데 이것도 오히려 특혜를 주는 법안이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법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성원 위원 저 김성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회계법인이나 이쪽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공공기관 이런 쪽에 밸런스를 맞추고 또 규제 완화를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차관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지정 취소 요건 완화를 했을 때 그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M&A 지원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M&A가 사실상 굉장히 스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M&A 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지정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두 개 지정을 했다가도 사실은 또 잘 안 일어나니까 지정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지정되어 있는 M&A 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M&A와 관련된 전문성이 그나마 있다고 보이는 곳은 대부분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관들이 M&A 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공신력을 가지고 M&A를 준비하거나 컨설팅해 주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지정할 때도 저희가 좀 권고를 해서 지정을 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컨대 삼일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들은民間에서는 잘하니까 우리가 권고를 해서 들어와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지정을 취소 할 수 있게 두면 그분들이 사실 안정성이 약간, 저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자발적인 이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1개월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M&A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은 좀 과도하고 이것을 1개월보다는 좀 길게, 저희는 6개월 정도 생각했는데요. 그 정도로 좀 길게 잡아 주시면 지정받는 기관들도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기관 자체가 지금 한 12개 기관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12개,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12개 기관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실적은 대략적으로 M&A가 일어난 것은 23년에 한 464 건에 규모로는 한 36조 정도가 일어났고요. 실제로 컨설팅이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컨설팅 같은 것은 많이 일어납니다마는 실제 M&A가 성사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주로 대기업까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의 M&A는 사실은 집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 의견은 어쨌든 지금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줘 가지고 M&A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송재봉 위원** 이게 지금 지정돼 있는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이것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왜 어려운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러니까 1개월이다 보니까 사실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물론 이 기관들이 본업이 M&A가 아니고 원래는 말씀드린……

○**송재봉 위원** 그러면 그 1개월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얼마나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송재봉 위원** 아니, 사례가 없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지정 취소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례는 없지만 지정 취소의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는 있어 왔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종민 위원 먼저 하시고.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제가 좀 늦어 가지고 앞에 위원님들이 혹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1개월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형식적인 규제성 조항이라 이것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이라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것 개정한다고 그래서 M&A가 더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제가 현장에서 들어 보면 M&A 문제의 핵심은 세제의 문제입니다, 세제. 세제에 대해서 중기부가 기재부를 좀 더…… 이것 중기부 사안이에요. 기재부 사안이 아닙니다. 세제실이 기재부에 있다고 해서 그 사안이 기재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수단이 예산하고 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세제를 중기부 관련된 업무에서 중기부가 나름대로 정책 방향대로 밀어붙이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세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황이나 아니면 중기부의 계획 이런 건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M&A 관련된 지원 세제 부분은 제가 중기부에 근무하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개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3년도도 한 번 했었고 200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강하게 기재부에 건의를 해서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 그다음에 그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평가 그다음에 새롭게 벤처기업의 M&A 방법으로 도입되었던 주식교환이나 영업양수도 관련되는 법인세 법이나 소득세법에서도 관련되는 세제를 저희가 다 개정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정된 내용이 대부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전달해서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서 개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이 더 필요한 부분, 현재 있는 세율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되거나 또는 없애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기재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세제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M&A 펀드에 출자하는 것에 대한 세제도 또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 검토해서, 이것 지금 6개월로 늘린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를 지원하든지 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미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로 업무를 한 달을 안 해도 6개월을 안 해도 1년을 안 해도 2년을 안 해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지금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장기간 늘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 기존에 이미 이 사유로 포함돼서 취소된 사례도 전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견을 주신 것처럼 M&A 지원센터로 지정한다고 해서 큰 혜택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지정 자체로서 시장에서는 공신력이라는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취소 요건을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영역 기간을 장기간 둘 필요가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규모가 36조나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정리 한번……

○**소위원장 박성민** 예,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곽상언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그러면 바로 6개월로 늘리는 것보다 한 3개월 먼저 늘리고 그다음에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싶습니다. 그런 수정의견 한번 제시해 봅니다.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일단 1개월이 너무 짧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돼 있는 기관들이 원래 M&A를 전업으로 하는 기관들이 아니라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기관들도 많고 하다 보면 1개월 동안에 사실 부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1개월 금방 가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돼서 취소의 위험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였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1개월보다 좀 길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하신 말씀 보면 부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부주의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곽상언 위원 맞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논리적으로는 곽상언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해도 그렇고 안 통과해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정부가 준비를 해 온 법안이고 업무 부담이 있다니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제안대로 한 3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곽상언 위원님 말씀이 옳다는 건 다 동의했으니까, 그 정도로 가면 어떨까요?

○곽상언 위원 저는 원안 유지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해야지 되는데.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3개월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곽상언 위원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기왕에 혜택을 주었는데 그 해당 업체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미 혜택을 주었고 혜택을 준 상태에서 장기간 지금까지 업무를 잘해 오다가 본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A 지원센터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M&A 중개를 하고 싶어서, 정말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신력을 좀 부여해 주십시오라고 정부에다가 지정을 신청한 사례보다는 기존에 중소·벤처기업 M&A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런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저희가 많이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같은 테서, 사실 그네들의 본업은 M&A라기보다는 금융지원이 많거든요. 다만 금융지원을 하다 보면 많은 기업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M&A 중개나 컨설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정부가 권유를 해 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M&A를 중개를 하고 싶어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정받은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기관들 저희가 계속 같이 끌고 가면서, 공공기관이 그렇게 업무를 해태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한 달 정도 업무를 부주의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지정 취소 요건에 내몰리게 되면 그 기관의 공신력도 문제가……

○곽상언 위원 부주의함은 취소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는데 혜택을 준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방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하나가 개정이 되고 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법률도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차관님, 지금 벤처기업이 어렵고 벤처기업이 활성화 안 된다는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국정감사 때도 하셨고 그랬는데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무런 쓸모없는 법안을 왜 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고쳤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법안을 왜 내고 있어요? 왜? 위원님들 이렇게 오랜 시간 이것 가지고 왜 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해 가지고 벤처기업이 활성화됩니까? 그렇지도 않은 이런 법안을 왜 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한 번 취소된 것도 없고 취소를 검토한 것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가서 점검한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걸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납득을 못 시키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으면 이걸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을 납득을 시켜야지 그걸 못 시키고 있는 법안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의견도 갈리고 또 이 법안 개정해야 별로 효과가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충분히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3안은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표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종민 위원 제가 의견 잠깐만, 기록으로 좀 남깁시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종배 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방향은 법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법을 없애서 이런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는 건데.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적다고 그래서 법을 폐기해 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뭔가 M&A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사기나 아니면 벤처기업 환경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건 불필요하다 이렇게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이 법을 유지시켜야 된다면 1개월 조항은…… M&A라는 업무가 간단히 얘기해서 상담하고 집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M&A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회사 분석을 해야 되고 관련돼 있는 법규정이라든가 양자…… 이거 사실은 한 달 안에 뭐가 마무리되기가 쉽지가 않은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광상언 위원이 우려하는, 이게 여기에 선정된 기관들이 약간 특혜 요소나 뭔가 메리트가 있는데 일을 성실히 안 하면 좀 칼같이 해야지 왜 이걸 늘려 주냐 이런 의견이신데 이게 만약에 그런 특혜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M&A 지원은 여기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이걸로 인해서 크게 무슨

업무나 영업상에 큰 이익을 보는 이런 사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적 때문에 의뢰를 받은 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빨리 우리가 폐기 논의를 하는 게 맞고—하나라도 법을 줄이는 게 나오니까—그래도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기관들이 이 한 달 조항 때문에 대개 업무상의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리니까 한 3개월 정도로 조정하는 건 맞다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는데 빨리 계속 심사를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를 좀 풀어 줘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현장에서 한 달 단위로 서류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종배 위원** 본 위원도 정부에서 이걸 납득을 못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보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정부에서 그간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갖춰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정부에서는 아마, 저한테도 한두 군데 기간이 굉장히…… 이 업무가 지원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한 달이라는 게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굳이 한 달이라는……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이 과정이. 그래서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한 3개월 정도 줘서 추이를 좀,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게 넘어왔을 거고 또 업계에서 의견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나름은 한 거라 저는 3개월로 해서 M&A 활성화가 조금 된다면 어려운 데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상언 위원님의 결단이 필요하시지요?

○**곽상언 위원**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법을 이렇게 쉽게 개정해 주고 나면 유사한 법률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소위원장 박성민**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또 어찌겠습니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곽상언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제 의견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의견은 밝히고 3개월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곽상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소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곽상언 위원님은 원안이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3개월로 수정 의결하자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 의결한다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3개월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15쪽입니다.

먼저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한국장애인협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는 금원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금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18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현행법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3년 이내의 범위로 기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하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를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시행일을 다소 늘려 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23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에 대하여 굳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궁금한 거는 부처에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르면 장애경제인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여기의 의견은 확인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협회의 의견은 따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냥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단체고 국감에도 나오는 데인데…… 국감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감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는 데인데 그래도 이런 법안이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제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안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오히려 또 장애인 기업들은 위축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법안들은 의당 관련 협회나 기관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장애인기업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법안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저희가 확실하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강한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3년 이내에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소위 논의 과정 중에 좀 더 강한 제재 방식이, 그러니까 5년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은 어떤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까 소위에서 하는 것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철퇴를 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처에서는, 지금 현행 법안은 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5년으로 하는 것에, 더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은 현행 1년 동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3년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3년보다 더 갑자기, 1년에서 5년으로 갑자기 이렇게 기간을 늘리게 되

면 사실은 기업활동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측면도 좀 있고, 물론 확인 취소를 한 이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이 취소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3년이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성원 위원**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그냥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명의 대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가짜 장애인기업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추가시킴으로써 3년까지 확대하면 일단은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는 충분한 의사표시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5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우선 3년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서 또 저희가 장애인기업들 관리를 죽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도 강화하고 이렇게 제도개선을 저희 스스로도 많이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좀 더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김성원 위원** 제 의견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5년으로 확실하게 하고 그래야지 진짜 장애인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국감 때도 아마 이런 사례들이 꽤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 가짜 장애인기업이나 대여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실사를 하든 평가를 하든 이런 건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현재 장애인기업 확인은 저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어떤 심사 기준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 기준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종합지원센터에서 조금 부주의하게 관리를 하고 또 관리 의무를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부 부정한 사례들이 노정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하고 또 세부기준도 혹시 업계의 어떤 상황이나 또는 업계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게 선정할 때 공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당연히 엄격하게 기준을 강화해도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짜 장애인기업 명의 대여 이것이 수정안에 보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판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준 같은 것을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새로 만들어서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다면 이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성민 예.

○김종민 위원 간단한 건데요, 약간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의결하면서 의결 주문에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렇게 의결을 주문하셨잖아요.

○소위원장 박성민 예.

○김종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국회가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회의의 의결은 위원들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소위원장 박성민 빨까요?

○김종민 위원 위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것이어서 주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주문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는 않다.

○소위원장 박성민 행정실장, 시나리오를 왜 이렇게 썼노?

원래 이렇게 관례대로 계속 썼답니다.

○김종민 위원 관례이기는 한데.....

○소위원장 박성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입법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아서 한번 행정적으로 상의를 해 보시라고요. 왜 이런 관례를.....

○소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가 사회 할 때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 다 넘어가더구먼.

(웃음소리)

○김종민 위원 사실은 이 주문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위원장님에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물론 전문위원님 뜻을 내서 반영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또 위원님들 뜻을 반영해서 하는 문제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성민 예.

○이종배 위원 우리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 사유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법에서는 1년 이내니 3년 이내니 이렇게 크게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그냥

1년으로 돼 있다고, 취소한 날로부터 1년. 다른 사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무거울 경우에는 1년이고 좀 약할 경우에는 6개월이고 이런 게 없다고. 이것도 이제 '3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아래 놓으면 또 그냥 대통령령으로 3년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법에서 구태여 위임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3년으로 하고 1년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할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아까 의결한 데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그리고 상권투자조합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기획자의 정의, 등록, 등록 말소·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상권기획자를 지역상권 발전전략의 기획·실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기획자의 등록, 등록 등의 공고, 등록의 말소·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권기획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법인은 시설·인력, 자본금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권기획자의 업무는 지역상권 발전전략 기획·수립 및 실행,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운영,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전문보육 및 투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권기획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상권기획자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권기획자의 업무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기획자 등록, 등록 말소, 등록 취소 시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기획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특정 업무 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권기획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체계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창업기획자 규정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수립하고 실행하는 민간의 활동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관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일부 인용조문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권기획자, 상권투자조합 등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의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장인 제3장의2로 구분하여 ‘상권기획자 등’이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권기획자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볼 때는 제도 설계와 그다음에 관련되는 규정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 쪽하고도 많은 의견을 계속 교환하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저 의견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벤처부가 굉장히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 우려도 있고. 별도의 민간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과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기존 행정체계와 역할 중복,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 그리고 현재 상권 발굴은 향후 공공데이터 기반의 상권분석 시스템과 빅데이터, 정책도구를 통해서 충분히 고도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민간한테, 상권기획자에게 기획 권한과 공적자금 운용 권한까지 부여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 주도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도 우려가 있고 기획자와 상권투자조합이 상권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경우 자칫 투자수익 중심의 개발 논리로 인해서 원주민인 영세상인들이 밀려나는, 아까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이런 공론화가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중소벤처부가 이렇게 상권기획자라는 것을, 조직을 하나 두었을 때에는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소벤처부가 빅데이터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안이 있는데 그 기구의 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지 민간한테, 이 상권기획자를 뒤서 그렇게…… 현장 주체 상권 분석, 도시계획 등 관련 법제 전문가, 이런 학계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기획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떤 소통의 시간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운영 리스크가 좀 오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지금 그렇게 쉽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오세희 위원님의 그 우려도 잘 이해를 하지만 지금 지역상권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떠한 것을 투자해야 되는가 보면, 벤처투자 했을 때 그때 창업기획자라고 아마 같은 의견들이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이게 중복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벤처의 큰 흐름 상에서 봤을 때 창업기획자를 투입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어떤 혁신 역량 이런 것들, 기존의 기득권을 좀 혁파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었고. 또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 조직, 기존의 조직과는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자금의 유입이라든가 아이디어의 발상이라든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벤처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에서의 상생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그대로 놔두고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하면 계속 쇠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권기획자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갖고 저희가 자꾸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지급하고 그렇게 바뀌어야지 우리가 쇠퇴해 가는 그런 지역상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부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기본적으로 지역상권이 사실은 김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괴멸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상권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타개해야 되겠는데, 다행스럽게는 각 지역마다 가 보면 로컬크리에이터라고 그래서 지역의 좋은 아이디어,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공적자금을 계속 상권에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까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상권의 발전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을 그냥 부동산투기 같은 그런 식의 감독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두기보다는 상권투자조합 같은 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비이클(vehicle)을 통해서 상권에 투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좀 더 전진한 상권 투자를 유도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권기획자 제도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벤처캐피털들의 창업 초기 투자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창업기획자 제도를 2016년에 만들었거든요. 그 덕분에 사실은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 지역상권 쪽에도 그런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가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말씀하신 벤처투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2016년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까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못 본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걱정이냐면 이 상권기획자라든지 이런 게 뭔가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떤 중간 마진만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업기획자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와 달리 실제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실제로 창업기획자 제도는 2016년에 처음 만들어진 후에 한 460개 정도 창업기획자가 지금 중기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네들이 결성하는 펀드도 제가 정확한 규모는 숫자를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상당 부분 펀드가 만들어졌고요. 그 창업기획자들이 주로 엔젤투자자들, 개인들을 이쪽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그네들의 자금을 창업 초기 기업에게 투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좋은 성과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덕분에 창업 후 3년 이내에 있는 초기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자금 조달이 쉬워졌고 또 정부도 그런 창업기획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정부의 R&D 자금이라든지 다른 사업화 자금 같은 것들을 매칭해 드림으로써 정말 창업 초기 단계, 과거에는 자금을 얻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기업군들이 지금은 자금 조달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송재봉 위원님.

○송재봉 위원 우리 골목상권이든 여러 가지 기존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인단체들 의견을 좀 들어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기획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이 상권기획자들이 과연 정말 지역의 기존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하겠느냐, 오히려 상권기획자들이 자신의 수익 추구 수단으로 역으로 이게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바로 의결하고 통과시키는 건 좀 빠르다. 그래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한번 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보완 사항은 보완 사항대로 좀 논의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곽상언 위원 추가 보충 의견 하나……

○소위원장 박성민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지금 실제로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법안의 취지가 반영이 된다면 지금 송재봉 위원님 의견처럼 당연히 도입하는 게 좋겠지요. 그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박성민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법안이라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지금 상권기획자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서 새로운 직업군을 도입하는 것인데 그러한 직업군이 도입될 만한 여건과 평가 기준이 정비되어 있는지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이 법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권기획자를 정의를 하고 요건을 지정을 하면서 시설·인력, 자본금, 재산 등의 요건을 정해요. 이것 실제로 그 상권기획자의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건 평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창업기획자라는 제도를 도입해 두었는데 그것과 지금 이 상권기획자하고 실질적으로 염밀한 구별이 되는지 그것도 매우 의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도입하게 되면 벌어

지는 일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돋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직업군을 만들어내는 작용으로 그칠 것 같은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상세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 좀……

○**소위원장 박성민** 예.

○**김종민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이고요. 하여간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뭔가 방지 내지는 조치가 필요한 그런 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지역구가 논산·금산이고 지금은 세종인데 지역구에서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관련 돼서 이 필요성을 사실 되게 많이 체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지만 현재 상인들이 갖고 있는 자발적인 혁신 역량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거 하려면 또 뭔가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돈 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목적보다는 지역 개발이익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지역상권 내지는 지역 상인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어떤 혁신 전문가들을 투입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 의견들을 몇 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우려들을 반영하든지 감안을 해서 보완을 해서라도 저는 이 제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보완입법 내지는 시행 과정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현재 우리 개정안에 보면 지역 상권기획자가 상권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상권기획자 자체는 자본금이 적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투자를 하기는 어렵고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는 처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주거용부동산 같은 것은 취득·소유를 금지하는 그런 방지 조항을 많이 두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단순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행위는 충분히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치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추후에 또 개정안을 내서 상권기획자나 상권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더 두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행위를 할 때, 특히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는 실사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하게 하고 또 사업계획서에 대한 감정평가도 의무화를 시키는 등 함부로 자금 투자를 쉽게 결정하거나 또 투자할 수 없게끔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들 정도면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현행 우리 지역상권법에도 상권

상생협약 체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권활성화구역이 아닌 지역에도 지자체를 통해서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상생에 의한 상권 활성화, 상권 개선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그게 시세차익을 의도하고 들어오는 거는 그건 당연한 문제고 그거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권이 살아났어요. 잘돼요. 잘되면 또 그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문제를 특별히 여기에는……

그럴 가능성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상권 활성도가 금방 달라질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성공해서 달라졌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이런 지역만의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상권 활성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법률 안에 상당 부분 그런 장치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장치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상권을 다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자체를 통해서 상권활성화구역이나 자율상권상생구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생협약 체결 제도 같은 거를 좀 확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상권기획자 같은 것은, 사실 현재는 제도권에 있지 않은 상권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 본 데가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충주에 가면 판아골이라는 그런 상권이 있는데 구도심 상권입니다. 거기에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들이 와서 상권기획 업무를 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권기획자들이 정부에 등록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전국에 한 4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좀 서로 자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좀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보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개정법률안을 내게 된 동기도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골목상권들이 특히 지역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정부의 조금 이런 지원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투기나 이런 세력들이 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다양하게 더 크게 번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권은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런 방법이 없는가, 오히려 상권기획자를 통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게 됐고.

사실은 골목 또 소상공인들의 미래가 지금 온라인이나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투기나 이런 걸 좀 막고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 운영해서民間의 어떤 이런 자본도 유입시키자 이런 의도인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오세희 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좀 저기했는데, 지금 정부 기능을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과연 검증 안 된 상권기획자가 있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살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상권기획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상권기획자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을 두고 정의가 다 된 상태에서 그게 나와도 되는 걸 법안부터 조직부터 만들고 그 후속 조치가 가면 부작용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본부뿐만 아니라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있지요. 또 산하에 진흥공단이 13개 본부에 31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8개, 지역본부 77개.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 계획이나 컨트롤타워, 공공데이터 그다음에 아까 빅데이터 그걸 구축을 해서 거기서 관리해도 충분히 핸들링을 할 수 있는데 별도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지역상권이 어렵다, 그래서 하나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획자가 필요하다.....

벤처 창업기획하고는 정말 다른 일이에요, 이거는. 지역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상권을 설계하고. 그럴 때는 검증되고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투기가 생기고 또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이 보는 상태거든요.

필요하지만 이거를 과연 그 큰 거대한 지역 중소벤처부의 산하 기구를 놔두고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역할이 없다 이러는데 이런 기회에 거기서 컨트롤하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업데이트해서 상권 정보를 주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직만 막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수요자보다 조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낼 때는 심각하게 소통도 하고 검증도 하고 또 관계 당사자들 얘기 들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게 돼야 상권이 산다 그러면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한 번도 소통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정부 기구가 지방에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기구가 이거하고 어떻게 활용이 이어질 건가, 거기서 관리 감독을 하든지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이게 후속이 나와야 된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지금 이 논의가 공론화가 좀 부족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면 공론화를 더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현장에서 지역 상업기획, 상권기획을 하는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 봤는데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 거는 이거는 무슨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역할을民間으로 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언제까지 계속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로 갈 거냐, 이건 글로벌스탠더드에 안 맞고 결국은民間의 자체 혁신 역량을 북돋거나 지원하는 게 우리 정책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 제도가 과연民間의 그런 혁신 역량을 자발적으로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또 그럴 만한 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런民間의 자발적인 혁신 역량을 촉

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마치 거기를 먹거리 삼아서 뭔가 작전세력이 투입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논의를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거나 그런 조항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라도, 공론화를 거쳐서 숙성을 시켜서라도 저는 민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이나 정부 조직 가지고 자꾸 뭔가 해결하는 이런 트랙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

○**소위원장 박성민** 김종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오세희 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제 말하고 다른 게……

○**소위원장 박성민** 제가 지금 오세희 위원님 말씀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게 정부가 민간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해 주고 뒤에서 지원해서 결국에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정부가 계속 주도하고 정부에서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상권기획자 제도를 한번 고민을 해 봤던 거지 정부에서 또 다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직접 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직이 지방에 방대하니 그 조직에서 누구 기획자를 두더라도 관리를 하고, 어차피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방에 지금 조직이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지방청하고 소진공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 기구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직접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상권기획자가 있어야지 상권기획자가 있다고 해서 전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전부 소통이 되고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기구가 만들어져야지 상권기획자가 그냥 좋아, 민간한테 줘, 민간한테 주는데 내용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이 하나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활용성, 권한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오늘 당장 상권기획자를 두자 이게 아니라 물론 지방 활성화가, 상권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지방의 지방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획자가 나와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 조항이 더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조직부터 내보내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거 아까 말씀하셨고.

또 새로운 발언?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오세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지역상권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 아마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있는 정부의 시스템 또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가지고는 지역상권을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관이 얘기하신 것같이 이런 상권을 어떻게 살릴지 이것을 아이디어 있는 젊은 분들이 모여서 상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협력해서 상권을 바꾸는 기획을 하고 소규모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봤고요. 이런 것을 좀 제도권으로 들여서 관리 감독도 하고 지역의 상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자고 해서 제도화

시키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지역상권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도 아마 더 많이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중기부에서 판단이 된다면 저는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더 보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종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소위원장 박성민** 예.

○**허종식 위원** 제가 인천시 부시장 때도 직접 해 보니까 지금 시장의 시장상인연합회나 상인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고, 민간기획자를 넣어 보면 확실히 달라져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줄 거냐 이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오세희 위원님의 우려도 맞는 이야기고. 정말 필요성은 있다. 민간기획하고 민간투자를 넣으면 정말 시장이 달라집니다. 기구랑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이 법안의 취지나 어쨌든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지방청에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현실 불가능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라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품기획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허종식 위원님께서 부시장 하셨을 때 그 효과도 좀 보셨지만 저희가 지금 이 무너져 가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라도 하나둘씩 좀 빨리 써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복되는 의견은 다 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소위에서 하루빨리 이것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송재봉 위원** 저도 짧은 상권기획자들 계속 만나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뭔지도 잘 알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조직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논의 안 나왔던 것 중에는 지자체들이 만든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이게 모든 지자체에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기획자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지역과 협력해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도 상당히 또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반드시 민간기획자만으로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짧고 혁신적인 기획자들이 참여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런 짧은 기획자들은 되게 원해요. 그런데 기존의 상권 내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외부의 기획자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교란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충분히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것도 추가로 보완할 것을 점검해서 저는 다음에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

만 오늘 당장 이것을 결정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거의 대부분 다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지금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상권기획자와 유사한 취지의 민간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둘어 보겠습니다. 상권분석사 아십니까? 그에 더해서 지역상권분석사도 있고요. 창업상권분석사도 있고요. 상가분석사도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상 다 같은 것인데 국가가 그러한 자격제도를 두지 않으니까 마치 그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민간에서 그냥 만든 자격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령은 그것을 한편으로 제도화시키는 법령인데 제도화시키려면 그만한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이 온전한 것인지 검증을 다했는지부터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우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개별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가게를 낼 때 또는 프랜차이즈 쪽에서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가지고 가게를, 영업점을 열 때 분석을 주로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대가를 받고 분석을 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개별 상점 또는 점포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상권기획자는 개별 점포라든지 개별 영업점 차원이 아니라 그 상권 전체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를 하고 주로 투자가 개별 점포라기보다는 공동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격증 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상권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한 50여 개 회사 또는 재단법인 같은 데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재단법인 중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해 놓은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그네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민간 회사가,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회사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상권기획 업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고 대체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모여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제 민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상권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나 또는 법인들을 제도권으로 저희가 끌어들여서 이분들이 중기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자치단체와 협조를 하거나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의 개인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미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자 말씀드린 이유가 기존에 있던 법이 아니라 새로 지금 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정해서 특정한 직업군을 만들어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더해서 기존에 민간에서 임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직업군을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금 하자는 얘기인데, 이 법은 시행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민간자격증을 국가 제도화하자라는 그런 것까지, 그런 요구까지 할 텐데요? 나중 일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민간자격증을 국가가 제도화시킨다고 보시면 그거는 조금 동의드리기 어렵고요.

○곽상언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민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유형화시켜서 상권기획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제도화시키는 것인데 아까 모두에 창업기획자 제도를 저희가 제도화시킬 때도 유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엔젤투자자들, 개인 자격으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부작용도 많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세제 지원 같은 것도 못 받다 보니까 우리도 좀 제도권으로 포함시켜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창업기획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제도화를 시킴으로써 있었던 효과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스타트업이 과열 양상을 보일 때는 또 투기적인 요소도 많고 거기서 자금을 빼돌리거나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제도화시킴으로써 그것이 상당히 양성화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또 대외신인도 같은 것도 많이 높아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6조의4 보면 이게 수정의견은 삭제 의견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게 아까 오세희 위원님의 지적하신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런 것 관련된 기관도 있고 정부 관련된 지원도 있고 한데 새로 민간에 혁신기획을 제도화시키면 그런 기준에 있었던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와 기관들과 이게 협력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점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그냥 예상해 보면 이것 만들어지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에 당연히 지원 요청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빼 버리면 이게 불법적인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물론 우리가 지원을 위주로 하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 자체를 아예 이렇게 조항을 빼 버리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 조항은 넣어 놓되 지원을 위주로 하지 말고 또 자발적인 민간 자금을 조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아예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송재봉 위원 한 가지 질문 사항인데요.

이 상권기획자의 등록 기준을 어느 정도, 현재 보면 시설·인력, 자본금 또는 재산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권기획자들 중에는 그럴 정도의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기획자들도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에 로컬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은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사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등록 기준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역으로 이런 분들의 활동이 배제되거나 그렇게 될 우려도 한편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도 좀 점검이 돼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현재 저희가 상권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전국의 50여 개

기관 또는 회사들 대상으로 쪽 대화를 하면서 상권기획자의 최소 등록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창업기획자의 등록 요건을 보면 최소자본금을 1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억만 갖추면 얼마든지 기획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고 전문인력도 한 2명 정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공간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것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송재봉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사자들의, 50여 개의 일정한 규모를 갖춘 데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뛰고 있는, 1억의 자본금을 확보하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획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획자들은 이 기준에 있어서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이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을 하면서 상당한 전문가들이 그 안에도 있고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 보고 그리고 이미 일정한 규모를 갖춘 기업들 얘기를 들어 보고 그리고 스스로 그 지역을, 이런 외부 기획자 없이 스스로 상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룹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분들 얘기도 들어 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민 오늘 법안이 13개 법안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만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언부언하시는 것보다는 각자 발언권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오전에 12개 법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심사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 상권기획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시행하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이런 걸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소위에서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소위에서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걸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소위 개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 심사도 굉장히 미뤄져 있는데 이걸 따로 또 간담회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이나 다음 쪽으로 큰 일정이 좀 지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간담회를……

○송재봉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 준비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간담회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계속 심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6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71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백년소상공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인용조문 오류가 있어 그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또 법 문언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78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백년소상공인의 실제 영업 여부, 지정 요건 유지 여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를 보니까요 협행법 16조의3 1호는 필수적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2호와 3호는 임의적 취소 사유인데요. 그러면 새로이 사유를 하나 더 부가를 하려면 그 2호·3호의 사유와 대등한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특정한 법률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그다음 식품 표시·광고법,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 가지를 듭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에요. 이 세 가지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면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업정지는 기간이 180일 이내에서 행위태양, 그러니까 위반의 방식이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보게 되면 단 하루의 영업정지처분만으로도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또 하나, 그 옆에 보게 되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는데 과징금 부과 액수가 천양지차로 다 갈립니다. 왜냐하면 법 위반을 했더라도 그 사유의 강도나 위반으로 인한 수익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영업정지처분만 받아도, 과징금 부과처분만 받아도 이러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또 하나, 지금 수정의견을 보게 되면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 가지고 불복절차를 두고 그 경우에 한해서는 지정 취소 효과가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는 딱 두 가지지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많은 상공인들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본인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은 행정심판 다 제기한 다음에 또 소송 제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력에 따라서 불이익처분의 효과 발생 시점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만 받으면 되는데 이 법률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에 더해서 별도의 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라는 불이익을 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좀 의문이라서, 딱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개정안은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백년소상공인들이 일부 영업정지를 받거나 또는 과징금처분 같은 그런 행정벌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백년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많이 제기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영업이 안되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고도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같이 대를 이어서 정말 괜찮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정해 놓은 백년소상공인이라 그러면 다들 믿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이게 다소 경미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관련 법령 위반을 했던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이 정도가 어찌 됐든 중기부가 부여했던 신뢰를 좀 위반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단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에는 일단 저

희가 지정 취소를 하게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의신청 이 부분은 사실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종국적인 판결이나 또는 불복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까지도 우리가 이 지정을 계속 취소한다 그러면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서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정을하게 된 것입니다.

○곽상언 위원 일단 제 의견은 다 드렸는데요.

아까 차관님 답변 들어 보면 처음에는 정부가 주는 신뢰, 정부가 주는 이익이 작은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정부가 주는 신뢰가 매우 크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제가 정부가 주는 신뢰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서 취소를 하더라도 다른 사유와 균형을 맞춰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법체계에 맞아야 하고, 그래서 사유 중에서는 행정 취소는 모르겠는데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하든지 영업취소에 상응하는 정도의 불법에 이르는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률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이게 기준에 없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을 내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곽상언 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이 수정의견을 보게 되면 개정안과 동일한 의견인데 ‘이의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것만 추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 4호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곽상언 위원님 안에 대한 수정 의결에 이의가 있습니까?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하지 말자는 의미지요?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개정안의 취지가 사유가 3개예요. 행정처분 세 가지를 듭니다. 영업정지, 영업취소, 과징금 부과처분 세 가지인데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하루부터 180일까지 있고요 과징금 부과는 1월부터 쭉 있으니까 이런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빼고 취소의 경우에만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나머지는 불가하다.

두 번째, 본질적으로는 행정제재처분을 부과했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법에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 제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4호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4호를 추가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4호를?

○허종식 위원 쉽게 설명하면 그냥 원안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개정하지 말고.

○곽상언 위원 예, 그렇지요. 원안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허종식 위원 저는 곽상언 위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위원님, 잠깐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성민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4호에 추가되는 내용이 사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백년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품목들을 보면 농산물, 특히 국산 농산물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에서는 원산지표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수입한 것인지 아니면 국산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갈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경우에는 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반해서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취소라든지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보다는 저는 국민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나 백년소상공인으로 중기부가 지정을 했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법률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받으면 사실 저희는 취소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잠깐만요.

차관, 우리가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런 신뢰를 줘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하는데 또 곽상언 위원님같이 하루 영업정지됐다고 해서 백년소상공인이 취소가 된다는 것도 좀 과중한 처분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업정지도 1일부터 180일까지라면 경중이 있을 거고 또 원산지에 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된 판매를 해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여기 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유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놨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안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현재 저희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4호에 보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저희가 현행 고시에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 고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현행 고시에서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정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한 번 위반한 경우에는 일단 1차 경고를 주고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지정 취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도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가 취소를 해야 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일단은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위반의 정도라든지 처분의 정도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합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절차법상의 제도가 구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법을 구태여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현재는 2단계, 1차 위반과 2차 위반을 나누어서 1차 위반에는 우선 경고를 하고 2차에서는 지정 취소를 하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한 사례로 넣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정 취소 사유로 법률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고시를 개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런데 현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하나로 그냥, 저희가 고시로써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로 넣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제 의견은 이건 너무…… 취소, 정지, 과징금이잖아요. 이것이 너무 과중하니까, 백년가게 이름을 취소까지 하는데 영업정지도 하고 과징금도 내고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루 임대가 있기 때문에. 글쎄, 그 이름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이런 것은 취소는 가능하겠지만 정지, 과징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이것 계속심사하시지요, 좀 더.

○**허종식 위원** 그러지요. 그냥 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도.

○**김한규 위원** 원안이 아니라 현행 법안.

○**허종식 위원** 현행 법안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종배 위원** 민주당 의원님이 법안 발의한 걸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것 폐기하자는 말씀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의견은 원안 동의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하나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회에서 원안 동의를 해도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의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종배 위원** 계속심사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성민** 계속심사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79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인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사업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1쪽입니다.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기부장관이 상인연합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연합회가 중기부장관의 업무 시정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인연합회에 대한 중기부의 지도·감독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기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지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상인연합회 지회의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과 개정안에는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오세희 의원님이 세 가지나 내셨는데 통 크게 통과시켜 줍시다.

○김한규 위원 아닙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법안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그다음에 연합회나 이런 조직들이 더 생기면 무슨 기준으로 지원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대략적인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매년 예산 심사할 때 국회에 예산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에서 상당히 강해질 텐데, 특히 지회가 인정된다면 지회별로 또 비교가 돼서 어느 지역은 많이 배정이 되고 어디는 적게 배정되고 이것 때문에 저희 같은 지역구의원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버리면 의원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요.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 법률이 통과되었을 때 전국상인연합회에 운영비로 추가되는 부분은 대략 1년에 한 2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합니다.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한 내용이고요. 인건비와 임차료, 기타운영비 같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 수정의견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정의견에 보면 각 지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중기부에서는 전국상인연합회, 저희가 아니고 본회에 일단 지원을 하고 본회에서 각 지회별로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정의견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이 연합회의 사무에 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정된 개정안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각 지회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충분히 보고받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정 내지는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각 지회별로 형평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의 산정 근거가 뭐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아, 2억에 대한 산정 근거 말씀이십니까?

○**김한규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한 기준인데요 인건비는 4인 기준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임차료는 사무실의 업무용 기기, 차량 다 포함해서 4인 기준 한 2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운영비는 한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이 돼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뭔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인건비는 무슨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인건비는……

○**송재봉 위원** 현재는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현재는 회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더 늘어나서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확장돼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정부의 입장이 정해질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실제로 현재는 전국상인연합회가 고정적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각 지역 연합회의 사무실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같이 쓰고 있다 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역 연합회의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만약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신규로 설치해서 4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냥 명확한 기준 없이 계속 예산을 협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은 법 66조(상인연합회)에 따라서 지금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국상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연합회를 설립해서 예산 요청을 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그렇지는 않고요. 상인연합회는 지금 법정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연합회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연합회를 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전국상인연합회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지역 연합회 말씀이신……

○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상인연합회가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이것 말고 제삼의 기관이 ‘우리도 전국 대상으로 상인연합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기존 상인연합회만 유일한 단체들이고 새로운 상인연합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예, 단체는 만들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국상인연합회는 한 기관입니다.

○ **김한규 위원** 그것은 정부가 인허가를 그렇게만 해 준 거고 제가 봤을 때 유일 단체만 두도록 법에 규정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른 상인연합회가 일정 규모의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중기부에다가 설립허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게 무조건 불허되는 구조로 돼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현행법상 연합회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단체입니다.

○ **김한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건 맞는데 그건 설립허가잖아요. 법적으로 설립허가라는 게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물론 사단법인 인가는 저희가 내 줄 수 있는데요 이 법률에 따른 단체는 하나입니다.

○ **김한규 위원** 하나만 하도록 돼 있어요? 몇 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걱정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단체들이 막 생겨 가지고 자기네들도 예산을 달라고 할까 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거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제 우려가 틀리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달라고 문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현재 전통시장법 제66조에 상인연합회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잠시 읽어 드리면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등은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인연합회는 1개 단체고 이 조항에 따라서 추가로 더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한규 위원**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허가는 정부의 재량 사항이고 연합회에서 신

청한다고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줄지 말지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요. 법에 하나만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누군가가 다른 단체를 허가신청을 하고 중기부가 안 해 주면 ‘왜 기준 단체만 인정하고 우리는 안 해 주냐’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결론이 그렇게 난다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느냐?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는 단체들이 생길까 봐 걱정을 하는 거고, 실무상 한 군데가 있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는 한 군데만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요청을 드리는 건데,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우후죽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규제를 하면 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정부의 방침이나 준비 상황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운영비의 규정이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를 뭘 운영비라고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보통 운영비라고 하면 운영에 필요한 사람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경비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임차나 또는 매입비 정도가 운영비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식대 같은 것도 운영경비에 포함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식대 같은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운영에 필요한, 회의에 필요한 그런 경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보통의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식대는 따로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요.

○소위원장 박성민 2억이라는 그 규정이 보니까 너무 애매한데 저희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수정안에 저희를 다 포함시킨다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를 둘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운영비는 본회에만 주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본회에 주고 본회가 그네들 이사회 의결이 나서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서 각 저희에다……

○소위원장 박성민 본회에 주면 본회에서 저희로 운영비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에서 본회에다가 운영비를 달라고 했을 때 그 규모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기본적으로 저희는 본회에만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본회가 저희 활동을……

○소위원장 박성민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본회에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종배 위원 규정에 보면 여기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하면, 개정안에 의하면 본회에만 지원하지 지회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회 활동을 본회가 서포트하는 형태……

○소위원장 박성민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를 들면 지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본회가 집행하는 구조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본회에 주면 본회에서 지회로 운영비를 나눠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 완전히 지출권을 나눠 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위원장 박성민 같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출권은 본회가 가지고 있고요. 지회가 활동을 할 계획서를 본회에 올리면 본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지회 활동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렇지요. 그런 구조가 되면 결국에는 전국 지회에서 전부 다 요청을 할 텐데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세희 위원 아니, 실지로 그렇게 못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지역은 지금 지원받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기본적으로……

○소위원장 박성민 방금 이야기한 게 본회에 주면 본회에서 지회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회에 지출권을 분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지회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겠다, 행사를 하겠다고 본회에 보고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본회가 의사결정을 해서 지회에 해당되는 행사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소위원장 박성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운영비를 본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지회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아니요, 그것은 지회가 전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상인연합회는 지회까지 포함하는 그런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본회에 있는 사람들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 있는 상인들이 행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고자 할 때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회에 요청을 하면 본회가 거기에 대

해서 대신 집행을 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말씀을 참 길게 하시네.

원칙적으로 저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또 운영비를 본회만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본회에 주면 당연히 저희로 같이 지원을 하는 거지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종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는 자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본회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권향엽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박성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저희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하면, 개정안에 의하면 저희를 둘 수 있도록 하니까 사실은 상인연합회 저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경영하는 저희에도 사업비와 운영비를 중앙회에서…… 당연히 저희에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비용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만들 수 있고 저희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든지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그냥 단순히 2억으로만 하는지……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것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활성화된 데는 더 잘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고 하는 것도 자체에 따라서 조금 더 차등 지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상인연합회에 사업비 같은 건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상인연합회도 운영비를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내신 거고요. 저희를 둘 수 있는 것은 이번 법에 새로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85쪽에 보면 6항에 수정의견으로 저희를 둘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다음 항에 저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규정으로 볼 때는 저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지 운영비를 중앙회에서 나눠 주는 것, 배분하는 것 이런 건 차관이 잘못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꼬인 거예요.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비를 나눠서 준다는 얘기는 차관이 잘못 답변한 거고 저희에 대한 운영비는 7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종식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박성민 예.

○허종식 위원 차관님 잘못하셨는데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연합회에 지원을 해 줍니다, 실제로.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 안에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상인연합회 반대파가 있잖아요.

이걸 문제 삼아요, ‘사업비만 지원해 주라고 돼 있는데 왜 운영비를 썼느냐’. 사업비와 운영비의 차이는 정말 간극이 없어요. 이게 늘 반대파의 공격 대상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 한 거니까.

그리고 상인연합회 본부에 대한 지원만 연간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본부와 지방은 다르지요.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사실은 제가 조금 혼란을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타운영비를 저희가 추계한 것은 사실 4700만 원으로 해 놓고 있고 그 안에 보면 간담회라든지 포럼 같은 사업비가 저희 추계에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의 고유한 활동이라기보다는 본회와 저희가 서로 연결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또는 본회의 임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본회가 책임지고 집행하는 형태로 가면서 저희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4700만 원 가지고 저희의 본격적인 활동을, 많은 저희, 모든 저희에 지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활동에 국한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현재는 지역 상인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상인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개정안은 지역 상인연합회를 전국상인연합회의 저희로 저희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의 개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저희일 뿐이지 규정을, 그러니까 본회에서 확보한 운영비를 저희에 나눌 수는 없다 그 말씀이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지금 하신 말씀도 그저 추계일 뿐이지 그게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모른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소위원장 박성민 지금 아마 임시로 당장 필요한 게 한 2억 정도 본회가 필요하지 앞으로 이걸 열어 놓으면, 운영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놓으면 이게 얼마나 커질지는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

○오세희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전통시장이 상인연합회인데요. 여기만 지금 중앙회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단 저희나 지부는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업을 주고 거기서 매니저 주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줄 수는 없어요. 소상공인연합회도 마찬가지로 절대 주지 못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상인연합회는 이미 지역

은 사실 활성화돼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중앙회가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중앙회가 사무실이 없으니까 자기 개인 지역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직원을 주면 정책이나 정부하고도 좀 교감하고 지역도 관리할 수 있는데…… 지역이 왜 저희로 뒀느냐면 각자 사단법인을 두다 보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조직으로 들어와야지만 되지 각자 사단법인은 영리도 추구하고 사업도 별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지 여기 중앙에서 지원하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회 사무실을 하나 적게 두고 직원을 그래도 적게 둬서 법정 단체니까, 대표 단체니까 정부하고도 소통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79쪽에 보면 기재부안으로 협·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별표로 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성 경비는 이미 지금 중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일반적으로 사업비에 포함해서 운영비가 아주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저희가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속에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필요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보통 전체 사업비의 한 10% 정도를 운영비로 계상할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한규 위원** 자료 84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단체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부 측에 여쭤보는 건데, 저희의 경우에 소상공인법은 저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장이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이 박스 25조의2로.

그런데 이번에 전국상인연합회는 그것은 아니고 지자체가 그대로 직접 저희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좀 뭔가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단체고 구조도 비슷하니 뭔가 비슷해야…… 왜 이렇게 체계를 달리하는 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조직화가 소상공인연합회보다는 훨씬 더 빨리 과거에서부터 조직화가 되어 있었고 본회 조직도 있었지만 각 지역별로 지역 상인연합회가 별도로 사단법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상인연합회가 광역자치단체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본회 조직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각 저희가 사단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아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단법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 저희에다가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진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사단법인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을 그냥 그대로 저희로 인정해 주면서 바로 지자체가 그 지역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중앙회가 사무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가 됩니다. 되고, 그러면 중앙회에서 저희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 말씀 분명하게,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소위원장 박성민 맞고, 그러면 이 건은 중앙회의 운영비다. 앞으로 얼마가 들어날지는 모르겠다.

이건 주로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주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

○소위원장 박성민 인건비 4명?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우선 4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10호 의안까지 하겠습니다.

10호 의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제가.....

○소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88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용이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70조의2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중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둘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 중에서 90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5호에서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기부는 이 5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91쪽에서는 저희가 신고포상금 관련 중기부 권한 중에서 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둬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회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인규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곽상언 권향엽 김성원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박성민 송재봉 오세희 이종배
허종식

○청가 위원(2인)

나경원 박상웅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정책기획관 김우중

글로벌 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